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666

발의연월일: 2022. 7. 26.

발 의 자:윤재갑·고민정·김승남

김정호 · 문진석 · 신정훈

위성곤 • 이개호 • 이정문

전용기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사용지와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도입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특례들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농어촌 생산 및 소득이점차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한 수요감소 등으로 농어촌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사용지와 어

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 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69조의2제1항).
- 나.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 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69조의3제1항).
- 다.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 라.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에 대한 비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87조의2).
- 마. 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 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88조의5).
- 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99조의4제1항).
- 사.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4년 1월 1일"을 "2029년 1월 1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	소득세의 감면) ①
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	
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u>2022년 12월 31일</u> 까지 양도함	<u>2027년 12월 31일</u>
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	
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	
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	
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④ (생 략)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 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u>2022년 12월 31일</u>까 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 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 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 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 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 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u>2027년 12월 31일</u>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③ (생 략)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 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 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 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 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 합법인에 혀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 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 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

		행과 같 ·녀등이		증여빈	ㅏ늗
		대한			
면) (<u>1</u>)				
		_			
					-20
27년	12원	<u>31일</u>			
	14 근	<u> </u>			

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 3. (생략)

② ~ ⑧ (생 략)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 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2027년 1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2 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1. <u>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u> <u>12월 31일까지</u> 받는 배당소 득등: 100분의 5
- 2. <u>2024년 1월 1일</u>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제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

2027
<u>년 12월 31일</u>
인 12월 31년
1.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 2029년 1월 1일
1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u>202</u>

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 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 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 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 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 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 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 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 1. 2. (생략)
- ② ~ ⑧ (생 략)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u>7년 12월 31일</u>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세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용) ①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u>2022년 1</u> 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 6. (생 략)

② (생 략)

<u>2027년</u>	_1
<u> 2월 31일</u>	
1 ~ 6 (현해고 가으)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